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 필리핀 vs.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 중재판정의 동아시아 역내 합의

박 영 길\*

---

I. 서론

II. 중재재판소 판정의 주요 내용

III. 중재재판소 판정의 동아시아 역내 합의

IV. 결론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센터장

## I. 서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22일 제기했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에 관한 판정에 이어 2016년 7월 12일 본안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중국을 상대로 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급격히 확대하는 데 따른 반작용에서 제기됐으며,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유권 문제는 다룰 수 없지만 판정 결과가 오늘날 세계 영토분쟁 가운데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이른바 9단선을 기초로 한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관할권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해양법협약의 난제 중 하나였던 ‘도서’와 ‘암석’의 구분을 직접 다루었으며, 중국의 동시 다발적인 인공섬 건설·무분별한 어업행위·해양환경보호를 직접 문제 삼았으며, 그리고 중국이 소송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재판소의 관할권 없음과 재판결과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안고서 중재재판소는 거의 5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판정문을 내놓았으며, 그 내용은 세기의 판결로 불릴 만큼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중재 판정 후 약 4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기사,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와 논문을 통해 판정의 내용과 함의들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이 기존 논의의 중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복잡한 판정문을 간단히 정리하고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함의를 되짚어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으리라 본다.

## II. 중재재판소 판정의 주요 내용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한 총 15가지 사안에 대해 판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남중국해의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포함되는 남중국해의 해양 수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기타 주권적 권리 혹은 관할권 주장은 해양법협약에 반하

는 것으로, 협약상 중국의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둘째는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도서’와 ‘암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후 각 지형들이 ‘도서’, ‘암석’ 또는 영해도 갖지 못하는 ‘간조노출지’인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에는 없었지만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지형인 이투아바(중국명 태평도)를 섬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다른 모든 지형들이 섬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필리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솔을 간조노출지로 판단하였다. 셋째는 남중국해에서 행해진 중국의 여러 활동들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필리핀의 EEZ와 대륙붕에서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방해하고, 중국이 자신의 국민 및 선박으로 하여금 필리핀이 자신의 EEZ 내 생물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스카보러 솔의 영해에서의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권을 중국이 침해했으며,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선점과 건설 활동이 협약을 위반하고, 중국이 위협한 방식으로 범집행 선박을 운영했다고 하는 필리핀의 주장을 중재재판소가 모두 수용하였다.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제기한 15개의 청구취지를 거의 다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에 없던 이투 아바의 법적 지위까지 섬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소송은 필리핀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5명의 중재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판정했다는 점도 필리핀에 힘을 실어 준다.

### Ⅲ. 중재재판소 판정의 동아시아 역내 함의

#### 1. 필리핀과 중국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2013년 1월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재판소 소 제기에 대해 중국은 소송에의 불참, 결과의 부정 및 불이행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필리핀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한 중재판정이 내려지자, 이는 부당한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때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중국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두고서 정치적,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고, 중재판정 이후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필리핀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필리핀을 발판삼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주된 동아시아 전략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필리핀도 미국을 배경으로 중재판정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예상되었었다.

그런데 중재판정 이후 이렇게 예정된 시나리오의 주된 변수는 다름 아닌 필리핀에서 나왔다. 즉 중재판정을 2주일 앞둔 6월 30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국내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대외관계를 반미, 친중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근본적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10월 19일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군사, 경제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10월 베이징을 방문 시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났을 때 중재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두테르테는 “그것은 종이(a piece of paper)에 불과하며 중국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방문자로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는 우호적이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당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잠시 미루어 뒤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두테르테가 수용하였다. 대신 양국은 13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135억 달러(15조 2,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꾀하였다. 두테르테와 시진핑은 11월 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 달만에 다시 만나 양국이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우호협력의 기회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과 역사적 권리, 해양지형들에 대한 권리 등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가진 중재판정이 남중국해를 놓고 벌어지는 국제관계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두테르테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반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중재판정 이전 상황보다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판정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판정의 이

행을 떠나서 실리를 챙긴 셈이다. 물론 필리핀의 반미 친중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중재판정의 이행 요구를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를 잠시 접어두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그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중국도 아직까지는 남중국해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조치들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해서 필리핀-중국의 정책에 대해 유의해서 볼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스카보러 솔 주변에서의 어업 문제이다. 스카보러 솔은 필리핀 연안에서 116.2km 떨어져 있어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 해양지형인데, 중국은 이 주변수역에 해군과 해양경비대를 파견하여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단속했고 이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결국 필리핀이 중국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곳이다. 중재재판소가 스카보러 솔이 ‘섬’이 아닌 ‘암석’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에 이 지형의 영토주권이 누구에게 있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되었으며, 더구나 중재재판소는 12해리 영해 내에서도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필리핀은 스카보러 솔 주변 수역을 포함한 자국의 EEZ에서는 물론 그 12해리 내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수역에서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통제할 것인가가 관심 대상이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두테르테의 베이징 방문 이후 중국은 해양경비대를 스카보러 솔에서 철수시켜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허용하였다. 11월 20일 페루 리마의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두테르테에게 스카보러 솔을 필리핀 어민에게 계속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고 외신은 전하였다.<sup>1)</sup>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재판정을 의식한 것은 맞지만, 전면적인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이 필리핀 어민에게 어업활동을 개방했을 뿐 중재판정과 같이 주변 수역이 필리핀의 EEZ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이 간척 및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세컨드 토마스 솔과 미스치프 리프에 대해서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총 7곳에 인

1) South China Morning Post, “Xi tells Duterte that Scarborough Shoal will stay open to Philippine fishermen”, (2016.11.20.)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47747/xi-tells-duterte-scarborough-shoal-will-stay-open>.

공섬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위 2곳이 필리핀의 200해리 EEZ 내에 위치해 있다. 중재판정에 의하면 두 지형은 영해도 갖지 않는 간조노출지이다. 따라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타국의 EEZ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서 필리핀의 요구 시 해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지형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에 공식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중국도 추가적인 건설활동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지형이 9단선을 기초로 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관할권 주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필리핀 입장에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자국의 200해리 EEZ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스카보러 솔에서와 같이 중재판정과 관할권 여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인공섬 이용을 필리핀이 허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등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필리핀의 석유 및 가스 개발지역인 Reed Bank에 관한 부분이다. 이곳은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데 중국의 반대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개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가 9단선을 근거로 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을 부인함과 동시에 가장 큰 지형인 이투 아바를 비롯해서 남사군도의 모든 지형은 EEZ와 대륙붕을 가지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거나 간조노출지, 또는 수중 지형이라고 함으로써,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은 본토 연안을 근거로 한 EEZ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필리핀의 Reed Bank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이 이 지역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와 이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추정으로는 이를 허용한다면 중국이 남중국해의 다른 지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 근거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이 필리핀에 미개발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필리핀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필리핀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를 심분 활용하여 실리를 취하고,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양자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재판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2. 동남아시아 국가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필리핀-중국 간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자국과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들 국가들은 특히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재판정을 대하는 태도도 달리 보이고 있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는 7월 12일 중재판정이 나온 후 판 중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했는데, 그 중 아세안 국가로는 당사국인 필리핀을 제외하곤 베트남이 유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2)</sup> 아세안 국가들 중 남중국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은 사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팽창에 대해 필리핀보다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중국과의 갈등의 골도 훨씬 깊은 국가이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중국 해군이 충돌하고 그 결과 서사군도 전체와 남사군도의 일부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특히 수년 전에는 중국이 베트남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하고 유전을 방해함으로써 베트남이 전쟁 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하기도 했고, 어업으로 인한 갈등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서사군도에 대한 국민감정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감정 그 이상으로 뜨겁다 할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서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제외할 경우 중요 현안은 베트남 EEZ 내에서의 유전 개발과 어업에 대한 분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근거로 베트남의 200해리 EEZ 내에서 유전개발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유전개발은 막고, 중국 어민들이 베트남 EEZ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들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베트남이 소송참여를 넘어 중국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 제기를 준비하게 했으며, 필리핀의 승리를 선언한 중재판정은 소송 제기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고무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반대로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도 과거의 일방적이고

2) 중국에 판정결과 이행을 촉구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및 베트남. RealClear Defense,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 Two Month On" (2016.9.22.).

[http://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16/09/22/the\\_south\\_china\\_sea\\_arbitration\\_rulingtwo\\_months\\_on\\_110106.html](http://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16/09/22/the_south_china_sea_arbitration_rulingtwo_months_on_110106.html).

힘에 의해 밀어붙이는 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은 양자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의 확대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까지 필리핀-중국 간 중재판정의 이행 결과를 살피면서 자국에 미치는 함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화해 몸짓에 적절히 호응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적극적인 소송 제기와 요구를 통해 현상을 변경시키는 것 사이의 고민이다. 시진핑이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대통령을 만나 남중국해에서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sup>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함의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국토와 함께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의 맹주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남사군도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그 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대해서도 다른 아세안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어민들의 활동반경이 인도네시아의 연안에까지 미치면서 인도네시아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고기를 훔치는 것은 범죄”라고 하면서 자국 연안에서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을 폭파시키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조업지역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위치하여 중국의 관할 수역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 예컨대 최근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섬 인근 EEZ(중국의 9단선 범위에 속함)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이 그곳은 자국의 전통적인 어업지역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도 불법조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요컨대 중국으로선 중재판정으로 국제법적 토대가 더욱 견고해진 아세안의 강국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해서까지 9단선에 기초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3) South China Morning Post, “Xi tells Duterte that Scarborough Shoal will stay open to Philippine fishermen”, (2016.11.20.)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47747/xi-tells-duterte-scarborough-shoal-will-stay-open>.



### 3. 일본과 한국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 특히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들이 있다. 이는 중재판정 이후 한국 언론들의 수많은 보도와 함께 학연정의 각종 세미나와 회의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두고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재판정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펼쳐왔다. 그런데 비록 중재판정이 필리핀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내용과 판정 이후 전개된 상황들은 일본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사안을 두고서 중국과의 이해관계得失을 따지면서 대부분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한 중재판정 중 특히 ‘도서’와 ‘암석’의 구분은 중국에게 중재판정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 일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할 때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조어도마저 섬으로 주장하기 어렵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중국과의 등거리선 경계 주장 근거를 약화시킨다. 중재판정이 무엇보다 일본에 타격을 안기는 것은 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 사안이다. 일본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 도서와 암석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서 오키노토리시마를 EEZ와 대륙붕을 갖는 ‘섬’으로 주장하면서 실제 대만 어민의 200해리 이내 어업활동을 단속해 왔다. 일본은 나아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보를 제출하여 소위원회 심사까지 마쳐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였다. 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니므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중국과 한국의 강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CLCS는 2012년 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였는데, 일본은 CLCS가 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었다. 중재판정에 비추어 볼 때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닌 암석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중재판정의 이행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21명의 CLCS 위원이 새롭게 구성될 경우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

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한반도보다 넓은 대륙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주장의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만으로 포기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의 중재판정의 한국에 대한 함의는 국내에서 개최된 많은 세미나와 회의에서 상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재판 참가 여부를 포함한 소송에 임하는 전략 등도 관심가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함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재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을 아주 넓게 보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 제298조의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같이 한국도 2006년 배제선언을 하였지만 이것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국제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호막이 될 수 없음을 중재판정이 확인시켜 주었다. 중재재판소는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관해서 적극 해석하여 관할권과 위반 여부에 대해 넓게 인정하였다. 이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시설공사 등을 할 경우 일본이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원치 않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동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물론 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일방적 소제기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영향은 없겠지만,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소제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 미스치프 리프와 세컨드 토마스 솔에서 필리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서 인공섬을 건설하였는데 두 지형이 간조노출지라는 중재판정의 결과 중국의 행위가 전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이를 이어도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하는 수역에 있지만 1:2 정도로 한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행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면 항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위 두 지형에서의 인공섬 건설이 주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반면 이어도 과학기지는 그렇지 않은 점, 그리고 전자의 경우 중국의 미약한 관할권 행사 근거마저 중재판정 결과 잃게 된 반면, 후자의 경우 처음부터 한국이 연안으로부터의 인접성을 근거로 할 때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IV. 결론

남중국해는 가장 복잡한 도서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가장 밀도가 높은 해상 교통로이며, 동시에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이 강력한 해양력 팽창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법, 국제정치 및 안보적 관점에서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의 중재판정은 이러한 긴장관계에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 큰 변경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9단선을 근거로 약 80%의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주장했던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EEZ와 대륙붕을 갖는 ‘섬’의 자격을 아주 높여놓음으로써 남중국해의 어떠한 해양지형도 섬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은 남중국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도 대부분 국제법에 반한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판정의 결과면에서도 가히 세기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 현실이 ‘법’과는 큰 괴리가 있음은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 이후 국가 간에 전개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중재판정은 5명의 해양법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많은 학자들이 중재판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심지어 소송 무용론, 나아가 국제법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음도 사실이다. 어쨌든 중재판정 이후 전개된 상황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재판정의 엄격한 이행보다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국가들의 국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국제정치의 엄정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 참고문헌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47747/xi-tells-duterte-scarborough-shoal-will-stay-open>. (2016.11.20).

[http://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16/09/22/the\\_south\\_china\\_sea\\_arbitration\\_rulingtwo\\_months\\_on\\_110106.html](http://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16/09/22/the_south_china_sea_arbitration_rulingtwo_months_on_110106.html). (2016.9.22).

Abstract

## PCA Ruling on South China Sea : Implications for Region

Park Young-Gil \*

On 12 July 2016, China's maritime claim to most of the South China Sea (SCS) based on the so-called nine-dash line was rej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ncerning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the legality of the so-called "nine-dashed line", the status of certain maritime fea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maritime entitlements, together with the lawfulness of certain actions by China which the Philippines, in a case brought in 2013, alleged were violations. As having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China's claim had no legal grounds in UNCLOS, thus undermining China's claims, and establishing that China has no exclusive legal rights to control the area roughly the size of India.

There are some major implications from the Tribunal's ruling in the Arbitration award. These include implications on: how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d waters, how to promote maritim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how to safeguard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how to promote the rule of law in the SCS. Since its application of UNCLOS in East Asia, it has been obvious that the only way to resolve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is to build strong maritime cooperative partnerships under the auspices of the rule of law.

**Key Word : UNCLO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South China Sea, Regional Maritime Security**

논문접수 : 2016년 10월 5일 | 논문심사 : 2016년 10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

---

\* Head of Polar Policy Research Center, Korea Maritime & Fishery Institute(KMI).